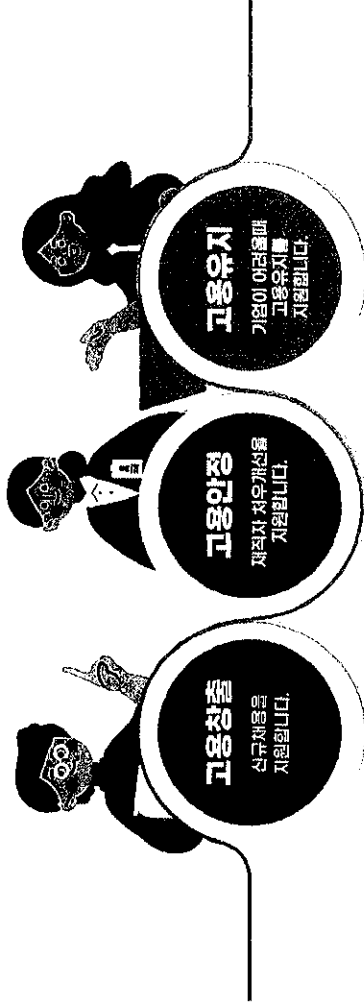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본 안내책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담당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종년 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신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 후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려금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선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령·장애·여성·가족·신장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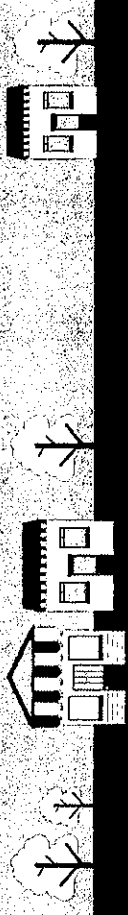
지역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종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목 차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2. 고용장려금 찾기	3
II. 고용창출장려금	5
1. 사업개요	6
2. 지원 절차	7
3. 지원 유형	9
4. 지원 제외근로자	10
5. 지원제외 사업주	13
6. 감원방지 의무	15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6
III. 고용안정장려금	27
1. 사업개요	28
2. 지원 절차	29
3. 지원 유형	31
4. 지원 제외 근로자	32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33
IV. 고용유지지원금	43
1. 지원개요	44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47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52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55
1. 청년내일채움공제	56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58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2
5. 고령자 고용지원금	64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67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71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5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6
VIII. 참고사항	79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80
2. 부정행위 조치	82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83
4. 신중년 직할직무	85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99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 ☑ 일자리 확대하기 지원
-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신종난 적용직무 고용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 정규직 전환 지원
- ☑ 위리남몰리 지원 장려금 지원
- ☑ 임·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 출산휴가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장려금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 임·생활 곤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2

고용장려금 찾기

1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연장근로를 단속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인자리 함께하기 지원	16
②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9
③ 신종년 작업직무에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신종년 작업직무 고용지원	20
④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1
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
⑥ 청년을 고용하여 정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56
⑦ 장년을 정년 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지고용 지원	64
⑧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6

2 /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9
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	33
③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임용종사제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위려별일자리 장려금	35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7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2
⑥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3 /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 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7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2

4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③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71
④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

1

사업개요

- ㉔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㉕ 지원을 받기 위해
 - [공모형]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일차러함께하기(공모형), 신중년취업직무
 - [공모형]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없이 신규채용 등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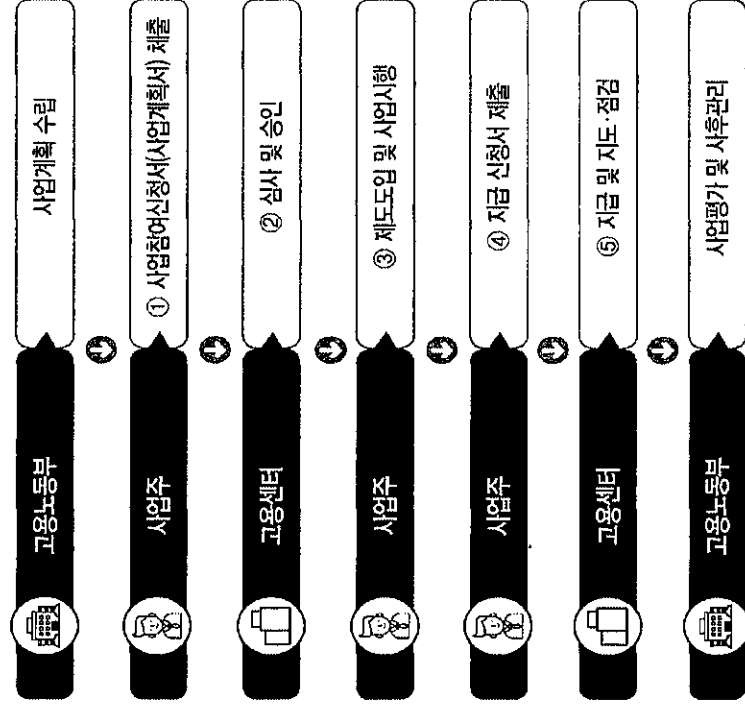


II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감원방지 의무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공모형] ① → ② → ③ → ④ → ⑤ / [요건형] ④ → ⑤

①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지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선선택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종년 좌합자우 고용지원의 경우 장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공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고대제, 개편, 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성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심 사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④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⑧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⑨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등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④ 중증장애인 ⑧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가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 ⑤ 결혼이민자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건설일용직 ⑨ 장애인 ⑩ 나트(N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하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일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2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④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⑥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⑤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④ 중증장애인 ⑤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이해 유형 해당자

-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노숙인 등 비주거가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신용회복지원자
- ⑦ 결혼이민자 ⑧ 위기청소년 ⑨ 여성기업 ⑩ 건설일용직 ⑪ 장애인 ⑫ 니트(NETT)족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① 취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 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③ 고용지원센터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아름답게를 이수한 사람

-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⑥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⑤ 비정규·취약근로자

1 /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일반유형·무도유형·기타주점업, 껌블링 및 배령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① ~ ⑤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와 동일
-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⑦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 고용촉진장려금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아님

- ㉕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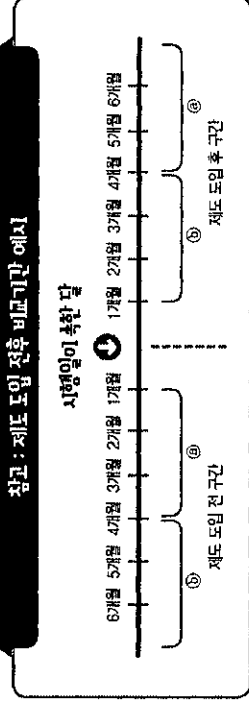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아래 가~다의 유형) 중 하나를 시행
 -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①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16P 초과)를 제외하고 산정
-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 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비)*를 지원

-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출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사업추진체계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 월할 계산하지 않음

3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종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종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①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③ 고용보험 가입
-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다만, ④ 사업의 원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원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⑥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VII. 참고사항 / 04. 신종년 적합직무 참조(85P)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출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월년도 말일 피보월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월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채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522 참고)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명의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관, 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립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1. 유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100%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및 1. 유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중립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 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취업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취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1. 유정의 청년 특례유형 및 비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인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원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불, 단, 취업 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취업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들어간 있는 사람 중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취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II. 고용장출장려금

연번	취임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員の 범위
2	여성세로로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취업고충해원 프로그램」, (고충노동부, 여성가족부)	- 취업고충해원 프로그램 중 마친 시점으로서 만 40세 이상의 여성 (만 40세 미만인 자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래 연 가계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고충노동부)	- 「고령자 취업역량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아침 이코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내용자(참가)를 마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충공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학교교육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학교교육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충공단이 운영하는 「취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및 출연」(고충노동부)	- 취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및 출연(출연)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충공단이 지원하는 취업지원금, 및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취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충노동부)	- 취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 및 출연(출연)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한국장애인고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지원금」, (고충노동부)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에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지원금」, (고충노동부)	- 장애인 취업지원금에서 초기사업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에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금」,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23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0	국립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재직근로자임용촉진기공하는 '취업박람회' 및 재직근로자임용촉진기공하는 '취업박람회'에 운영하는 '취업교육원' (국립공무원, 국가보훈처)	- 국립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근로자임용촉진기공하는 '취업박람회'를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취업교육원(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취업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취업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출생실수금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자부) 장년(고령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50 이하(가구 구성원) 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자립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운영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받은 프로그램은 마친 사람
12	자립자치단체가 취업지원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원(제2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자립한 고용유지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유지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전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정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자립한 특별고용유지지역 일대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전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정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유지지역 이차지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자립한 고용유지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유지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전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정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역을 이차지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자립한 특별고용유지지역 일대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전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정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차지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조영미 프로그램" 및 "바스온전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창원지역 취업훈련 지원프로그램' (노동자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구직단절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18	청년기초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주근로자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지원프로그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마진 지원)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인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구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정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성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성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편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1 사업개요

-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인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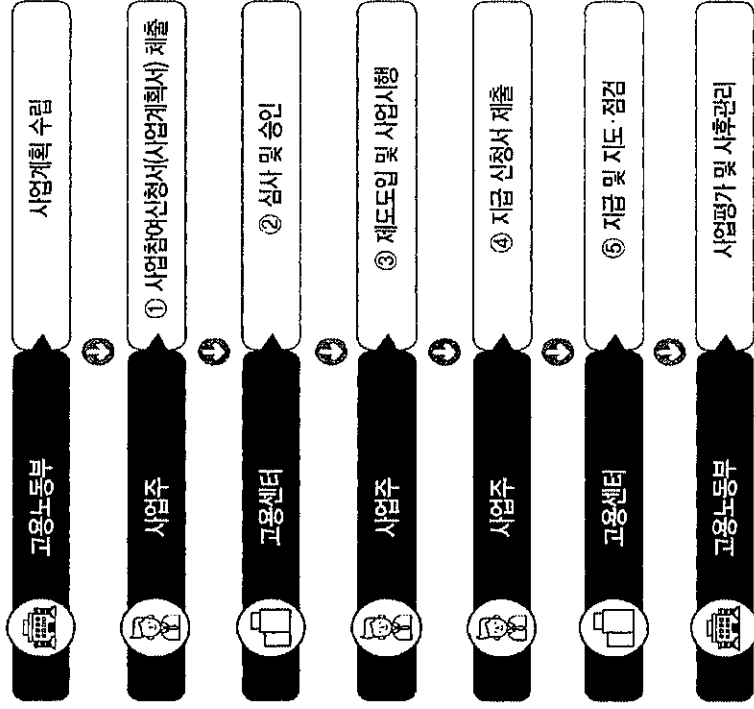


III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공모형】 ① → ② → ③ → ④ → ⑤ / 【오전형】 ④ → ⑤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동)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전적서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중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 휴일 전월가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 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권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가정 임입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당 활동일수에 따라 월당 15~30만원 (임·생활 환경 임파라 구축비) 제택·취락근무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불요	위라벨 임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정규직전환 지원, 위라벨임자리 장려금, 임·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위라벨임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정규직전환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임용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파견 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만 대상이 됨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인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고용보험 가입

지원수준 및 한도

○ ① 지원수준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간접노무비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② 지원 인원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는 지원 한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서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일 말일 기준 해당 사업(정)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일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일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정)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일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일 말일 기준 해당 사업(정)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 사업 참여 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사내) 한도인월 30명인 경우 1차 15명, 2차 10명, 3차 5명 분할은 가능

지급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2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기록에서 기록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영단위 공개중인 사업자

지원요건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지급
-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간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월(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월)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 경우에 지급(1개월분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간접노동비	30만원 (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정액)	· 중견기업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당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은 부지급(간접노동비만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 정액으로 지급)

-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신청

-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
- (지급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인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인정장려금 → 지급신청서 작성

3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제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부패방지국면권위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물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제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제택·원격근무제	• 제택·원격근무일에 업무시작(업무종료)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업무시작(업무종료)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제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함

지급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

②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지원 /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정조(73P)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수시 심사	•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노동관서장의 수시 승인	
재택근무 근태관리	•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실시간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 보고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의 증명 자료 제출
재택근무 사업승인 간소화	• 인사부, 초동지녀 근로자 포괄한 재택근무 활동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시행시기) '22.1.1 ~ 코로나19 상황 인정 시까지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 지원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요건

-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 ②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전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병자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제하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병자의무 위반이 아님

제출서류

-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지원수준

- ① 육아휴직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최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월 30만원
	육아휴직 득제* 적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월 30만원

※ 만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최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③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②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농·축·림 등 육·농·수·축·림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3. 이후 농·축·림 등 육·농·수·축·림 등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IV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개요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1 지원 개요

○ 유형별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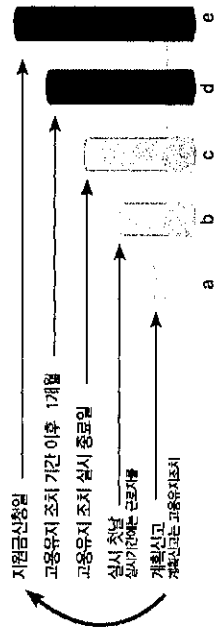
유형		지원 기준
유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무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기간중 해당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4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유형별·업종별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 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률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지역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에서
최소한 b~d



○ 지원제의 사유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나 해고의 예정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피보험 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규채용 허용 사유(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여 채용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기 불가능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경영 구조상의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원칙)
 - 다만, '22년에 한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20~'21년), 기타 경영 및 노동 여건 제반 사항 검토가능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 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가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 앞월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⑤ 사업의 일부 부서(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⑥ 자동차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사업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5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 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편과 관계없이 관련승정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 매출액 등 비교 시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적용시 전연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매출액·생산량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년, '22년)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년, '21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한 상황 감안

- 파견·수급 사업주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의 경우 사용자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8호)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 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서류 신고 인정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협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지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근로시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계(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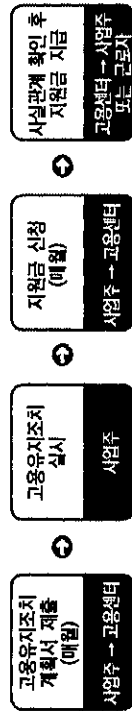
구분	일반 업종	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유급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1일 한도 6.6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어려움 강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2.6.30.까지 자차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차감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유급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산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여(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원평균한 것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응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두가지 유형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 1일로 산정

2 / 휴직

지원대상

- 휴직의 의미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좌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령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두가지 유형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22.12.31.까지 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인정(단, 해당 보령연도 기간 중에 180일까지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함)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유지 시 해당보험료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일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특별임종 및 고용유지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반력대상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유지신청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 다만, 코로나 위기 상화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까지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90일)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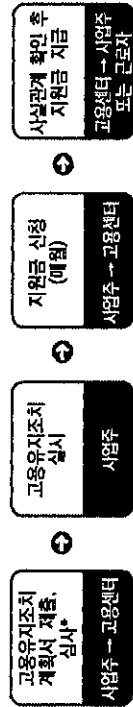
○ 지원수준

구분	일반 업종	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유지지역
무급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1일천도 6.6만원		

* ’22.12.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과

○ 지원절차

-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협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심사과정
- 심사위원회(관할 청 및 제주고용센터) 승인 필요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신청서) 관련 청 지정
- 사업계획서 접수보고서 작성 및 송부(→ 관할 청)
- 심사위원회 개최(관할 청별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정)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자신행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신행성에 기여

지원요건

- 청년: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아래 요건 해당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월 임금총액 300만원 이하인 자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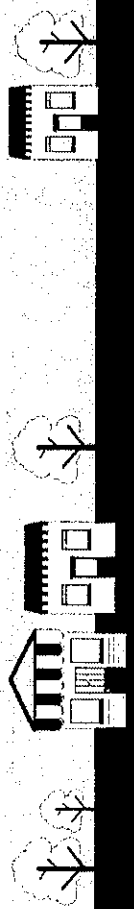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 ② (기업→청년) 2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받아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
 - *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30인 미만' 기업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자부담
 - ③ (정부→청년) 정부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적립구조

반기공제금	본인납입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본인부담)	300만원 지원 (기업규모별 차등 부담금)	600만원 지원 (정부직립)

신청절차

- (가입 신청)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심사·선발 → 청약 가입신청(www.sbcplan.or.kr)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청약가입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3~8번)
-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홈페이지 공개)으로 문의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2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20.12.1.~'21.12.31.에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상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합자수) 증가^③,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④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사업주(법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
-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임.
- ③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합자수('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합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합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합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 ④ (신청기한) '20. 12. 1.~'21. 12. 31. 기간 중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기한이 '22년도에 속하는 경우 '22년에 신청 가능

(예시) '21.8.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22.2.9까지이므로 '22.3.1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예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유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예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인위적 감원 금지(참여신청 1개월 전~지원금 지급기간)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신청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청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청년 도발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일람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중소기업인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행로 등을 제반한 사업주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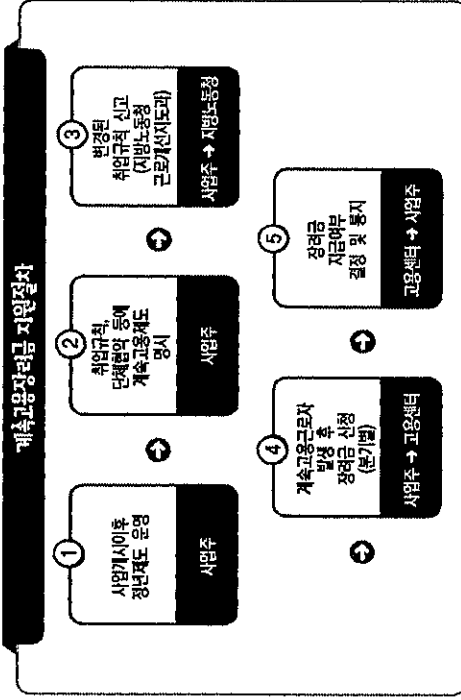
- (기밀요건) 청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청년 도발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청년을 연장(청년연장)
 - ② 청년을 배치(청년배치)
 - ③ 청년을 유지하되 청년에 도발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이내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년에 도발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거주)-2) 영주(거주)-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매월 말 퍼보협자수 평균의 30% 한도)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5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망 연장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영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밀요건)
 -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② 60세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월 평균 근로자 수)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로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초과하여 계약한 사람

*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지원수준 및 기간

- 중가 고용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혈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혈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혈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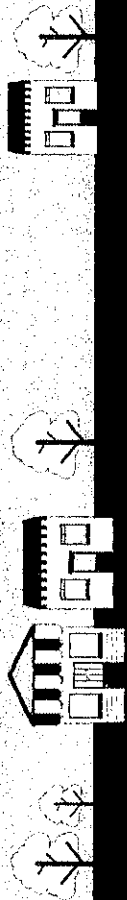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포함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혈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혈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내역		지원한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21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86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52만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지원금(월)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일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로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
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로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 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지원수준

- 융자금조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용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용자 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용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031-728-7065)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제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간(최대 3년)

인프라·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자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자,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자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양치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제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5/10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채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지원유형: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에 참여하여야 함

제출서류

- 고용안전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2.12.31) ①부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동명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2.12.31) ⑦북포시·영암군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1월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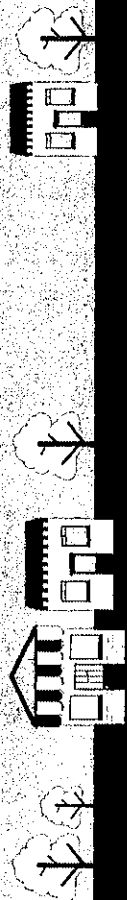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들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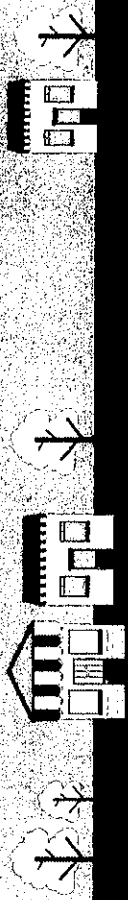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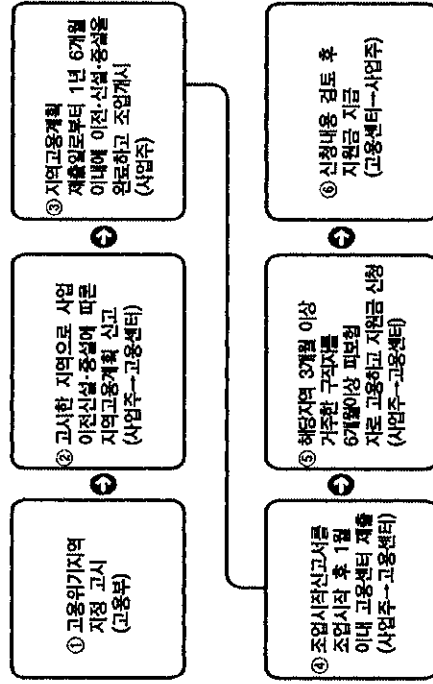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멀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절차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 상호조정

1

1 중복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자 고용유지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 4에 따른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자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인력의 정년(이하 이 조에서 "정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VIII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2. 부정행위 조치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4. 신중년 적합직무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제25조에 따른 고용자 고용연장 지원금 - 제25조제2에 따른 60세 이상 고용자 고용지원금 -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 제28조제4에 따른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산유망기업 고용안정장려금 -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상호조정비용 고시에 따라 지급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용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호조정비용</th><th>지원금 또는 장려금</th></tr> </thead> <tbody> <tr> <td>70%</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td></tr> <tr> <td>0%</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td></tr> <tr> <td>100%</td><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유예·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td></tr> </tbody> </table>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용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제2에 따른 60세 이상 고용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상호조정비용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유예·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상호조정비용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유예·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⑤ 근로자가 제28조 제2항제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20.8.28.)

추가징수 산정 기준	추가징수액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부정행위 분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 징수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8조제2항)

▶ 지급제한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20.8.2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0.8.27. 이전은 형법상 사기죄 등 적용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8.28.이후)
 ⇒ 부정수급액의 반환 +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형사처벌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300명 이하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동일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추방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직무분야	종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연구 관련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철학, 역사학, 언어학, 윤리학 등 인문과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은 응용하여 이론 및 응용기반을 개진, 개발하여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자위, 감독 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학,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자위, 감독 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기관, 생물자조단체, 재원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동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 방송·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 기기의 제조, 설치, 점검,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지원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의 입출력 및 출력 자료의 형식, 자료 처리 용도와 논리 자료 접근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작업은 IT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전문직무를 포함한다.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방식(제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	133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정보통신/ 방송·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호환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전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자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시험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문제해결 문제를 조사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직무분야	종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과 관련된 제인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0221 경영·인사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광고/조사/상용기획/행사기획/집행 전문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종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임원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용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94 집합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단 재직이나 기일이 요하지 않는 단종사무 일부는 제외한다.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 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재원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무는 창고,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확히 작성, 예산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저장·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체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지체·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금융/보험 사무원	금융/보험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0315 손해사정사 0222 보험 사무원

직무분야	중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정보통신/기술지원 (기술지원 보조원은 제외)	정보통신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은근한 오프라인 진상탐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차계를 개발하는 전문기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1350 정보통신 전문가 1360 통신 방송통신 장비 기사
	통신·방송·통신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360 통신 방송통신 장비 기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업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8411 컴퓨터 설치 수리업 8412 이동전화기 수리업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업
	통신·방송·통신 장비 설치·정비업	통신·방송, 통신·방송, 통신·방송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업 8422 통신·방송 장비 수리업 8423 방송 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업
의료/보건/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연속·영양·방송 기술자	연속, 영양,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광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 과장·현장감독을 감독하는 스텝장도 여기에 분류한다.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음향·화상·촬영 기사 4167 조광·영상 기사
	간호사	의사의 진단을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 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간호사에게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지도, 설명, 해설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조산사는 분만, 의도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 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40 간호사
	영상사	거장, 중진 및 일반 지휘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규장적인 음악들을 공연하기 위하여 스텝을 계획하고 조각 및 장면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50 영상사
	의료기사·치과사·재활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직무분야	중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의료/보건/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일반 병원에서 행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열 차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신원진료실에서 신도를 돌보거나 치료사를 보조하여 제혈, 물리, 기타, 작업자로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전문상담사
	문리·기술·예능 기사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종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	2141 문리·예능 기사 2142 컴퓨터 기사 2143 기술·기능계 기사 2144 예능 기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기사
	번역가 및 통역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직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직업을 말한다.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 (케드) 관련 종사자	기자 및 언론전문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뉴스 및 공적 성격의 사건을 취재하고 관련영역을 수집, 분석하여 기사 또는 논평을 작성하고 전파한다.	4120 기자 및 언론전문가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4113 출판물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 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회관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디자인	상형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다 창의력이 요구되며 기존 도면대로 작업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4151 제품 디자인 4152 패션 디자인 4153 실내장식 디자인 4154 시각 디자인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제조/서비스/케드	제조/서비스/케드	여러 분야의 기술자, 기술자 또는 산업디자인의 지원하에 건축물과 자원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1591 제도사

[illegible][illegible]

직무분야	종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 재료(비금속) 공여물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료 개발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21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22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물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험, 개발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자시스템, 장비, 부품의 부속품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물 연구 설계 개발 하며 산업화학, 폴리머, 재료, 자원, 환경 및 석유 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강도 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정보, 특성 등 물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 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종이,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학물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42 화학공학 시험원
	에너지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 석유 또는 가스 중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를 연구하고 특정 재료, 자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분야에 연관하는 것을 예로 들기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개발, 수행하거나 배치를 처리, 환경 개질이나 중대형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 공학(기술자) 시험원을 포함한다. 학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조사하고 분석, 실험(기술자) 시험원 등 시험원의 원인,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 장수 규정에 있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4 환경공학 시험원 ▶ 1555 보건위생·환경공학 시험원
공학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와 섬유 천과 및 직조 공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섬유 기본으로 삼의 색상, 인장력, 수축 및 신장의 정도, 염도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62 섬유공학 시험원
	속물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들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미소, 영양 비료의 증진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72 식품공학 시험원

직무분야	종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소설·빙해·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소방·빙해·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 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관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현장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 및 지도, 개선, 등의 일을 수행한다.	▶ 1581 빙해 기술자 및 연구원 ▶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83 산업안전 시험원 ▶ 1584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설비 설계·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물 재외의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적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 8111 공작기계 설계·정비원 ▶ 8112 공작기계 설계·정비원 ▶ 8113 불꽃이동장비 설계·정비원 ▶ 8114 이동·농장 공작기계 설계·정비원 ▶ 8115 운반설비 설계·정비원 ▶ 8116 건물·철도 기계 설계·정비원 ▶ 8119 농업용 기계 설계·정비원
	금속 관련 기능직 (단속·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립,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8121 항공기 정비원 ▶ 8122 선박 정비원 ▶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 8124 자동차 정비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립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공작기를 사용하여 금형업 제조, 보수, 정비하며 자동 및 반자동 공작 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 8131 금형원 ▶ 8132 금속공작기계 조립원
공학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냉난방 설비 조립원	냉난방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방 관련 기기를 조작한다.	▶ 1560 냉난방 설비 조립원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다.	▶ 8161 일반기계 조립원 ▶ 8162 금속기계류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의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	▶ 8171 자동차 조립원 ▶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 8173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 관련 기계·설비 조립원	금속의 자간, 정밀 과정에서 다기능 공작용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처리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기를 조작한다.	▶ 8211 금속기공 제정원 ▶ 8212 금속기공 제정원

작품분야	중분류	수행영역	세부직업
가게/ 건축 관련 기능직 (단순 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건설 및 재관원	건축 구조물 간의 금속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단열기 및 단열기를 설치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으로 건물, 공로등을 및 그 부속물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도도정시가 조직됨 기능이 되지 않는 단순업 무는 제외한다.	• B221 판금원 • B222 판금구조직원 • B223 제관원 • B224 제관구조직원
	단조업 및 주조업	금속을 가열한 후 하마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추형틀 만든 후 주철 또는 용해 철 또는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질 및 비철금속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B231 단조원 • B232 단조구조직원 • B233 주조원 • B234 주조구조직원
	용접업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 하기 위하여 용접장치를 기계를 활용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를 및, 금속을 조작한다.	• B241 용접원 • B242 용접구조직원
	도금업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백인도, 메크니, 레파 또는 코팅 기계나 특수 기계를 이용하여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 B251 도금원 (도장기(조직원) • B252 도금분무기 조직원
	전기공	전기 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	• B311 내선 전기공 • B312 내선 전기공 • B313 외선 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컴퓨터등,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 B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 B322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B329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화해/의료/ 식품/기타 기능직 (단순생산 직 제외)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증압변소, 전동승강차, 일반조명제 등 배상시설을 관리가 있는 형태의 자기발전 투사에 고용되어 있다.	• B330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전통,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직, 유지, 보수한다.	• B340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석유·광연가스 채굴 차이장치 조직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력을이나 천연열로부터 열원을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비의 조립과 정비	• B511 석연가스 제조 차 이장치 조직원
	섬유/아복기능직	자수를 표본, 양복,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박싱디자이너를 바탕으로 패턴을 통하여 그려 옷모형을 만든다. ※ 각 재질별, 패턴별 등은 제외한다.	• B613 섬유·염색기 조직원 • B621 패턴사

직무분야	종류분	수행업무	세부직업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정육원 및 도축원	가축을 도살·도축하고, 세척·절단·손질 및 가공 처리하여 관련 식료를 제조하며, 건조·염장 등의 보존처리를 한다.	*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가구/계도숙/간판 기능직	목재, 거구, 귀금속, 직면 등의 분야에서 솔지아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각과 조립 기능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 8831 가구 제조·수리업 * 8842 귀금속 보석세공업 * 8852 직면 제작·솔지아
	경장/마케팅/관리 신직업	■ 재능개발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사회문제, 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 기업재무관리직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단 발행 시사회적 및 2차 파해형지는 물론 기업 활동의 사업전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무관리능력을 수련을 위한 컨설팅을 활동, 그리고 자체경인 유자격인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 개발전문가 개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정책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행정절차를 마케팅 및 홍보, 수형유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컨설팅한다. ■ 전문채용관리네이더 초·중·고 학생의 관심분야 또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제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진직지명전문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들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 노년관리(사)비서관(원) 고령자의 노후 건강관리,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생활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산책치유지도사 술이 가진 기능을 활용하여 산책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책 지도를 프로그램형, 개별·모듬형 지도한다. ■ 산업기운출력(간접생산·동상업서) 기업의 제품개발에 따른 근무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장기간 심한 부작용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 3D모델링운영전문가 3D모델링을 조작·운영하여 고객에 따라 미디어전, 행사장, 3D포스터, 영상, 3D판넬, 가상·가상, 기계류 등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 되고 누르는 평면의 이미지를 비롯해 3D모형인 과정, 출력된 재료의 후처리 과정은 거쳐 최종 작품을 만든다. ■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두가지치를 창출한다.	
	사회복지/교육/관리 신직업		

공약관련 신직업
(4차 산업혁명 등)

자문분야	중분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권한 신사업 (4차 산업혁명 등)	공학	■ 연구장비전문가 고급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고차급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세부직업
		■ 연구실안전점검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장비 안전단계를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	
		■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험성 평가 방법, 유독물 유입/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등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 BIM전문가(디지털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	
		■ 드론 전문가 상업용 드론 비행이, 촬영/취득에 대해 드론 파일 전문가, 드론 수리/관리, 드론 운용 관리자, 드론 조종사 등 드론 관련 자격증이 발급된다.	
		■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취합하여 도시의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스마트컴 운영·관리자 스마트폰, 사설, 시스템 및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처리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학습, 리닝 /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디지털금융강사 디지털 기술은 융합한 금융업종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전자상거래 방법 등에 대해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스마트공장 운영자 기형·장제 생산, 운영관제에 이르는 제조과정 전반 또는 일부과정에 시공업체에 (주)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 성과, 자원의 활용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정을 운영관리한다.	
디지털 분야 신사업	공학	■ SW품질테스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 전에 앞서 프로그램용 테스트하여 문제점 및 보완점을 등록 평가한다.	세부직업
		■ 스마트팩토리와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은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 설비의 상태, 생산 공정, 제품유통경로 등 스마트공정을 구축·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스마트 헬스케어 연비사 사용자 헬스케어에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분석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맞춤형 특지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무분야	중분류	수행업무	서무직인
신직업	환경분야 신직업	■ 신소재에너지자원개발 대형경,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전문 자식을 바탕으로 정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귀환귀촌 전문가 귀환·귀촌인을 대상으로 가능 진 상담, 귀농 관련 교육부터 귀촌 후 주거·임대·가족·사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노후화된 건물은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 전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 대기환경심사협원 대기환경오염배출 테스트 허드 컨설팅을 평가, 환경 관련 각종 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하거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대용량 설치 건설현장 감독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수행한다. ■ 실내환경질 관리자 다중이용시설(아파트, 어린이집, 대학교점포 등의 실내공기질 전문관리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한다. ■ 신소재에너지 중성소 안전관리자 친환경자동차용 충전 인프라(충전소)에 대한 운영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역할 ■ 저탄소환경홍보 성탄절환경친화적 및 슬기로운가정의 등의 성탄주식자를 찾는 캠페인을 대상으로 영타해설 교육 및 상담, 팀원 인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에너지 이드메이저 에너지 소비 현황 등을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한다. ■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생산 유통 가공 등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나무의사 수목진료(수목 진단, 처방 및 예방 치료 전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 바이오 진단 전문가 혈액 및 건강관련 신소재 등 체액의 진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Ⅷ. 참고사항

직무분야	종류	수행업무	세부직업
기타 직무	기타 직무	■ 민력증서 미용 및 관리 종사원 거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과 청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방영도나터널, 오리 및 닭역원 강연회 등 동물 발달과 진화과학을 강사, 육아조사 및 자료 분석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간접생산 안전관리자 건설재해 분석을 통해 건설물의 시공·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공중위 안전 대책을 마련·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은퇴생계 전문강사 은퇴를 준비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시민터 동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석회석이나 석고를 가열하는 소성 작업을 거쳐 각종 시멘트의 석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플라스틱재 중 생산기계 조작원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형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분 및 재단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장비지도사 및 장비상담원 유종과 장비 설치를 상담하고, 장비운용 준비부터 사안관리, 장비시 수급 등 장비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생애경력 설계사 구직자나 재직자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직업영역을 분석하거나 미래의 상용 스스로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응력개발을 교양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특재가공기계 조작원 원도 또는 1차 제작된 재목을 제자, 절삭, 파쇄하거나 단판 또는 파쇄된 도재를 절삭, 임석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각종 목재가공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직무 (기준 선정 직무 이외)	■ 기타 직무 기준에 상응된 신종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단, 이 경우 자립 고용노동자의 편입에 따라 자립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기타 직무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용량서 고용정책을 지원제도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각중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9층 기린지연관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73, 7377-9, 7394-5, 7339, 7910-1
서울청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4, 4922, 4940, 4977-4979, 4989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7-4709, 4712-4715, 4721, 4732, 4774, 479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11메이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성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3410, 3402, 3473, 3496, 6002-5, 6014, 6025, 6034, 6047, 6055,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양동구 국회대로 612, 9층 (로레알유동)	서울특별시 양동구·영천구·강서구	02-2639-2158, 2162, 2187-88, 2260, 2265, 2413,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00-1803, 1805, 1861, 1863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길 27, 대동85플러스타워빌 3사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33, 9249, 9349, 9353, 9361, 9366, 9373, 9379, 9384-6, 9388-9, 9393-4, 9396

서울청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점)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재개발원청사 5층 중부지점고용노동청 기업지원관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91~ 4693 032-460-4671~ 4675 032-460-4677~ 4679 032-460-4641, 4684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641
	인천동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이문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4 032-540-2078
중남청	부산지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부천시 갈수로 380 부산고용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부천시	032-320-8972~ 8974, 8927 032-310-8843, 8852, 8854
	부산지청	진포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대로 125 김포고용복지센터 9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김포시	031-999-0939- 031-999-0944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동로 32-19 남영비트프라자 7차 4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고양시·파주시	고양시청: 031-920-3337/ 3998/3997/3998/ 3981/3976/3954/ 3962/3950/3957 고양북부: 031-920-3995/ 3990/3982/3957/ 3953/3928
경남청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8, 신동아미래다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동 2동 754)	강기도 의정부시·포천시·부천시· 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78-0832-5, 0838, 0893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90번길 32, 4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이천시·아산시·영평군	031-739-3177

중부청

서면부와 근로자의 돈돈한 통번저 고용정책금 지원제도

청	청(지점)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인양지청	인양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인양시 연양로 303 메세포스빌딩 2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인양시·고천시 평택시·외양사·군포시	031-453-0762-4, 0767-9, 3801, 3803, 3827
	인안지청	인안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인안사옥 3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안산시·시흥시	고용인재상담: 031-412- 6940-6946, 6948 고용유지상담: 031-412- 6645-664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평택시 강대로 1194, 정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강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6
중남청	김포지청	촌진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촌진시 퇴계로 9 (신사동), 배스프라이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김포시·화성시· 홍천군·양구군·인제군, 강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30, 250-1924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강릉시 강동대로 178(대동), 강릉고용센터 3층	강기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90- 9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기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부산청	영수지청	영수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영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기도 영주시·영성군	033-769-0960,09 42-3-0945,0951,0 954,0958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태백시 왕지로 119	강기도 태백시	033-550-8603, 8645
	태백지청	상제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삼척시 중앙로 214, 천진빌딩 4층	강기도 삼척시	033-570-1906
부산청	영월청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기도 영월군 영월읍 단풍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기도 영월군·장성군·광성군	033-371-6254 033-371-6261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연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북진구· 영해구·사하구	061-880-1823-7, 1931, 1971, 1979, 2047, 2072, 2083, 2100, 2102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 7216, 7220, 7244-7, 7249, 7250, 7282

부산청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강서구	051-330-9952, 9986, 9954-5, 9945, 9970
	성원지청	청림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산대로 60 청림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합천군, 의령군, 창원군	055-239-095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원로 138 (울산남동)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6
	양산시청	간재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회재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말안시	055-330-6432, 6434-6, 6440, 6444
	양산시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시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장안로 563 인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함안군	055-78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1894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동구-북구, 경산시-영천시-군위군, 상도군	053-68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대림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50-6,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서구 논곡동 논곡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서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광역시	대구서부지청	청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영천읍 중앙로 146 영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8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 3132, 3070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안학로 396 3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2516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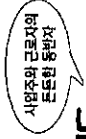
부산청

대구청

사면주와 근로자의 근로한 동맹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炭洞 중외 국가산업단지)	054-440-3360-4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동해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배동1길 67 문경새싹조형건축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31
	인동지청	인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인동시 강동로 400	경상북도 인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 영양군	054-851-8052
	경주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경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진리남도 나주시-화성군-곡성군, 구례군-영광군-영암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50-3201-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 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황간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5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학로 28, 군포저층빌딩 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5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534, 0636-9, 0626, 0683, 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성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송호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성(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주청	여수지청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용산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주시	061-650-0155
	여수지청 고용복지센터	전남 경주시 중앙로 410, 8층 키움나이트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17
	목포지청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단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0585
	목포지청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2913
대전청	대전지청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88번길 48 2층 기암지연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00
	대전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반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861
	대전지청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361-8892-3
충주청	충주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에이씨 충주분발빌딩 7층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 보은군·충원군·옥천군· 영동군	043-229-0704- 0709, 0715, 0716, 0720
	천안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해안군	041-620-7400
	충주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임원대로 39(공평동) 세일빌딩 4층 기암지연관	충청북도 충주시·영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37
	충주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내산동, 자진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청	보령지청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광명고용복지센터 3층 기암지연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청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광명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청 고용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www.moel.go.kr
인쇄처 동영기획 ☎ 044)868-7542